국고채권 교환(2026-12차) 관련 업무참고 사항

□ 처리 순서 : 입찰(D일) →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→ 채권반환 및 국채 교환 신청(D+2영업일)

□ 입 찰(D일)

- 응찰금리 개수 : 기관별로 종목당 7개까지 각각 다른 금리로 응찰 가능.
단, 7개 이하라 하더라도 동일 금리로는 응찰 불가

- 입찰 신청(BOK-Wire+)

ㅇ 증권경쟁입찰
· 증권경쟁입찰 내역 입력관리
- 국채교환 입찰정보조회 및 응찰
※ 2026. 9. 4. 국채 교환 회차 : 2026-112

□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
- 낙찰된 모든 종목에 대해 작성하며 국채거래용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한국은행 국채기금팀앞으로 FAX 송부하고 전화로 통지할 것
(Tel. 759-4740, 4754 Fax. 759-4750, 4753)

o 보유기간 확인서는 **세무증빙의 일종**이므로 반드시 전산원장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작성할 것(특히 이동평균법을 따르는 기관은 매수일 산출에 유의)

□ 채권반환 신청(D+2영업일)

- 국채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된 국고채권이 한국은행 국채등록부상에 낙찰기관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므로

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국고채권은 국채 교환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SAFE시스템의 채권말소등록확인화면에서 먼저 입력해야 함 [한국예탁결제원 채권등록부(☎ 3774-3391, 3397)]

□ 국채 교환 신청(D+2영업일) :

- 신청(BOK-Wire+)

  ㅇ **증권 → 국공채 → 정보조회 → 국채 교환현황 조회/국채교환 신청 (화면번호 070607)**

  ⇒ 조회 결과 **경과물의 양수도 완료여부*가 모두 "Y"일 경우만 국채 교환 신청이 가능**

  * 해당증권이 한국은행등록부에 등록(채권반환)이 완료되는 경우 "Y"로 그렇지 않은 경우 "N"로 표시됨

  ⇒ 조회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지표물, 경과물, 납부가액, 원천징수액, 특별징수액(지방소득세: 2015.1.1.부터 징수)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 후 교환 신청

<주요 입력내용>

① 교환회차 : 2026-112(입력)
② 고객번호 : 국채 교환을 신청할 해당기관 번호(선택)
③ 일괄 등록 여부 : 등록(선택)
④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번호 : 일괄등록 신청시 국채 교환 신청고객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번호(입력)
⑤ 청구 회사번호 : 고객번호와 동일(입력)

□ 기 타

- D+1일에 제출된 보유기간확인서 내용대로 국채교환정보가 입력되므로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정보를 수정해야만 국채 교환이 수행됨에 유의

- 매입가액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* 및 특별징수세액**(지방소득세)을 차감한 후 지급
  *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2010.1.1.이후 보유기간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
  ** 「지방세법」(2015.1.1.시행)

- **한은금융망(BOK-Wire+) 마감시간을 감안**하여 **보유기간 확인서는 15시 00분까지 제출, 국채 교환 신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 마감시간을 감안**하여 **늦어도 15시 50분까지는 교환신청 완료**

□ 보유기간확인서 작성시 참고사항

번호	신청 종목명	만기일
1	물가01750-2806-L1	2028.06.10.
2	물가01125-3006-L1	2030.06.10.
3	물가01625-3206-L1	2032.06.10.
4	물가00750-3406-L1	2034.06.10.

※ 필 독

Ⅰ. 소득세법 시행령

[시행 2016.9.23.] [대통령령 제27506호, 2016.9.22., 타법개정]

제22조의2(국채 등의 이자소득) ① 생략

② 생략

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(이하 "물가연동국고채"라 한다)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. <신설 2007.2.28., 2013.2.15., 2016.2.17.>

Ⅱ.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

<대통령령 제 24356호 2013.2.15.>

제4조(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

국채 교환 보유기간확인서[1]

(2026년 9월 7일)

한국은행 금융업무국 귀중

인감대조	계인	검인

국채교환 회차	2026-112	고객번호	

대상증권[2] 종목회차	단위 낙찰가	낙찰 금리(%)	낙찰액면 금액(억원)[3]	채권 매입일[4]	보유기간 시작일	소유[5] 구분
합 계[6]				—		—

위와 같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신고하오며,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책임과 오류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책임(가산세 포함)은 신고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기관 주 소 :
법 인 명 :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성 명(대 표 자) : (인)[7]
** 작성자 : . 연락처 :*

주 : 1) **낙찰일 익일 15시 00분까지 제출** (Fax: 02-759-4750, 4753, Tel :759-4740, 4754)
2) 종목회차 11자리 기재(예 : 국고채 04750-1309-10)
3) 억원 단위로만 기재
4) **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권일 경우에만 기재**
5) 법인세법 제120조(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)제①항에 따라<개정2011.12.31.>
소유구분은 자사분 1, 위탁분 2, 신탁분 3
6) 낙찰명세표의 기관별 합계액과 일치
7) 국채거래용 인감을 날인
8) ***보유기간 확인서 제출 후 교환 신청전 반드시 원천징수세액 먼저 확인요망***